옥외광고관련법, 규제완화가 우선이다

올해 들어 옥외광고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에서는‘ 간판문화개선관련 법률제정안 ’과 관련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그런가하면 국회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상태다.

광고계에서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옥외광고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의 법률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와 준조세 부담이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월 2일 옥외광고규제합리화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7일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을 확정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번에 확정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7월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4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돼, 소형돌출간판과 가로형간판, 애드벌룬 색상 및 건물벽면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옥외광고의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대체법안 마련이 거론되고 있다.

<표 1>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

1) 도시 중심이나 상업지역 15층 이상 건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해 도시경관 조성 및 LED(Light Emitting Diode) 등 관련소재 산업과 산업디자인 등 연관산업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전면광고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가 적용 기준을 사전에 규정키로 했다.
2)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의 가림막에도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3)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면적제한을 철폐해, 기존의‘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1/2 이내 에서‘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을 제외 하고는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했다.
4) 건물별로 광고 전체면적만을 규제하는‘ Negative System ’을 도입, 현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Negative System이 도입되면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건물별 광고면적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Negative System은 우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먼저 도입한 후 추진 실적을 보아 확대키로 했다.
5) 신규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module화하도록 했다.
6) 전광방송광고의 경우 건물 정면에도 설치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7)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시설 등이 추가된다.
8)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는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라는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9) 애드벌룬 및 전기이용광고물의 적색류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10) 버스광고의 경우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라도 버스의 차량등록지에 따라 모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 일괄처리해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표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개정 항목	현행(요지)	개정(요지)	비 고
① 소형 돌출간판 설치 규제완화	높이 5미터 미만으로 간판 1면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높이 5미터 미만이거나, 1면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바깥 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표시
② 가로형 간판 설치 규제완화	건물 4층 이상 측 · 후면에는 판류형 설치만 허용	같은 장소에 입체형도 허용	도시미관상 오히려 우수
③ 옥상간판 설치방법	가로 30m 이내, 세로 20m 이내, 높이 15m 이내, 건물높이 1/2 이내 (사각형 형태로 규정)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 최대길이 30m 이내, 총 면적 1,050㎡ 이내, 높이 15m 이내 (원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	옥상간판 정의, 실제에 부합
④ 광고물 색상 규제완화	애드벌룬은 총면적 중 흑색 · 적색류를 1/2 이내 사용	애드벌룬 색상 규제 폐지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⑤ 입체형 옥상간판은 안전도 검사 대상 제외	옥상간판 중 높이 4미터 미만 볼링핀 모형, 도료는 제외	입체형도 제외 대상에 추가	안전에 문제가 없음
⑥ 건물벽면 현수막 설치 규제완화	내용 변경시마다 신고	최초 부착시만 신고, 허가된 벽면 게시시설에 설치시 신고불요	

특별법 연장 위한 법안 발의 및 대체법안 준비중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원 발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정병국 의원안, 의안번호 3919호)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광철 의원안, 의안번호 3957호)에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1986년 아시안게임부터 대회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대회유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옥외광고관련 특별법(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한시적 허용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장, 이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옥외광고의 수익사업을 법률로 보장해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3월 23일 정병국 의원과 이광철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공동 발의자에게 옥외광고를 광고와 관련이 없는 특정체육단체에 허용함으로써 또다시 광고주에게 준조세를 부담시키려는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이계진 의원과 손봉숙 의원 중심으로 지난 3월 24일 회의를 통해 간판문화개선관련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손봉숙 의원실 차세원 보좌관은 공청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현재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며“ 공청회는 차후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차 보좌관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특별법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대체법안이며, 옥외광고 수익금의 관리주체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4월 중순경에 있을 내부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완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고계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간판광고과를 신설한 것이 옥외광고에도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 기본법령 안에서 규제완화에 초점 맞춰야

제일기획이 발표한‘ 2005년 국내 광고시장 현황 에 따르면 국내 총광고비 7조539억원 중에서 옥외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4%인 7358억원에 이른다.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옥외광고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범석 세명대 교수는“ 전체 광고시장에서 옥외광고가 차지하는 볼륨이 커지는 만큼 옥외광고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고 전하며“ 더 이상 특별법으로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옥외광고 기본법령 안에서 처리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들이 많은데, 옥외광고는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아니면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은 행자부에서 하고 전반적인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이라고 전하며,“ 문화관광부는 옥외광고를 제외한 도시환경 차원의 거리문화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KAA

취재 | 이수지